



선 람	기관의 장

제 898 호

2009년 12월 24일 목요일

차 례

조 례

○조례 제2009- 98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조례 전부개정조례	1
○조례 제2009- 98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4
○조례 제2009- 98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6
○조례 제2009- 98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17
○조례 제2009- 98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조례 제2009- 98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22
○조례 제2009- 98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조례 제2009- 98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30
○조례 제2009- 98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35
○조례 제2009- 99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44
○조례 제2009- 99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46
○조례 제2009- 99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1

규 칙

○규칙 제2009- 74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	56
○규칙 제2009- 74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8

공 고

○공고 제2009 -174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60
○공고 제2009 -1743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67
○공고 제2009 -1744호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69
○공고 제2009 -1745호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70
○공고 제2009 -1746호 2009.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가격조정 결정·공시	71
○공고 제2009 -1751호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72
○공고 제2009 -1754호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주민 공람·공고	73
○공고 제2009 -1756호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차량 매각 전자입찰 공고	74
○공고 제2009 -1763호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부과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009. 10월 2회차)	79
○공고 제2009 -1764호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부과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009. 10월 3회차)	80
○공고 제2009 -1765호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81

고 시

○고시 제2009 - 61호 간석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변경) 고시	82
○고시 제2009 - 62호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고시	86
○고시 제2009 - 63호 인천도시계획시설(하수도: 동넙2수문 앞 하수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87

회 람								
--------	--	--	--	--	--	--	--	--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구보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12월 24일

남동구 조례 제981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구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 남동 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및 그 밖에 구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이하 “구보” 라 한다)는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여야 하며,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규칙·훈령·예규
2. 공고·고시
3. 휘보
4. 상훈 및 사령
5. 구정시책 및 동 행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 지시사항
2. 국무총리 지시사항
3. 장관 지시사항
4. 인천광역시장 지시사항
5. 구청장 지시사항
6. 구 방침으로서 하급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구정 주요시책
8. 법령에 의한 면허·인가·승인·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구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제5조(게재의뢰)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사항을 구보에 게재하고자 하는 실·과장 또는 기관의 장은 게재하고자 하는 사항의 원문을 작성하여 문화홍보실장에게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게재조정) 문화홍보실장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의하여 구보 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구보의 효력) 구보에 게재된 사항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구보 분량 증가에 따른 구보발간 예산증가와 구보 보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책형(종이)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자구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자적 형태의 구보 발행 및 구 홈페이지 게재 (제2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12월 24일

남동구 조례 제98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하여 통장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통장 신분증을 발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행정시책의 홍보와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통장의 신분증을 발급·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통장의 업무수행 시 주민에 대한 신뢰감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통장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통장신분증을 발급 (제5조제5항)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12월 24일

남동구 조례 제98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 「과학관육성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천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 ②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4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

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

조제2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유기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12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

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써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7조(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인천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같은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

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의한 감면대상 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

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0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1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4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를 준용한다.

제2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를 적용한다.

제27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통보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2010. 12. 31. 까지 세제지원을 연장하기 위하여 구세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에서 ‘자활용사촌’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조문에 반영 (제2조)
-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그 개념을 명확화 (제3조, 제15조 및 제18조)
-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 (제11조)
-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 규정 (제23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구 세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12월 24일

남동구 조례 제984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인천광역시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이하 “구세입”이라 한다)”으로 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조세범처벌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 세무1과장,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실장, 경영재정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 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 “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단서 및 제5조제1항 중 “지방세” 를 각각 “구세입”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지방세(구세)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는 징수포상금의 지급범위를 세외수입에 대하여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징수포상금 지급범위를 세외수입을 포함한 구세입으로 확대 (제2조 제2항)
- 영수책으로 현금을 징수한 경우를 지급기준에서 삭제 (제3조 제1항 제1호)
-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을 현 직제명에 맞게 수정 (제4조 제3항)
- 지방세 부과징수 부서를 구세입 부과징수 부서로 변경 (제5조제1항)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12월 24일

남동구 조례 제98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로 한다.

제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구”를 “인천광역시 남동구”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증지가 소인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별표 1 중 (2) 납세완납(징수유예, 비과세) 증명란을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8c		2.5cm
m		
위 증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란이 삭제되어 관련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수료 반환규정 개선 (제7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정비 (제2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증명 관련 수수료 규정 삭제 (별표 1)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12월 24일

남동구 조례 제98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우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출장소 및 동 주민센터의 청사
 - 나.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 다. 구 투자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3. “매점”이라 함은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복권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바닥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다른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전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투자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구보, 일간신문 또는 구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
2. 장애인등록증 사본,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 대리신청 할 경우에 한함)

제6조(우선계약) ①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는 장애인 등이 두 명 이상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의 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계약만료시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계약해지) ①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은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사망·해외이주 등으로 직접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② 제1항에 의해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 별 표 】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 (제6조 관련)				
순 위	장 애 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1	장애등급이 1, 2급 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 급자	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5조에 의한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의 대상자 중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2	장애등급이 3, 4급 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 급자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5조에 의한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 를 제외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 조의 대상자 중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
3	장애등급이 5, 6급 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 급자			

※ 단, 동일 순위자 중 2가지 이상 조건 해당자가 동일 순위에서 우
선한다.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 이유

-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대상 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전공고 (제4조)
- 우선계약 (제6조)
- 사업자 의무 (제7조)
- 계약해지 (제8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12월 24일

남동구 조례 제98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남동구노인인력관리센터”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업 및 기능)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노인인력 개발센터”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보급 및 교육
2.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활성화 추진
3. 민간분야 고유사업 개발 추진
4. 노인의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5. 노인일자리 종합 정보망 구축
6. 노인 일자리박람회 개최
7. 그 밖에 노인일자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구청장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노인인력관리센터”를 “노인인력개발센터”로, “3월말”을 “2월말”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제3호),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제15조 중 “노인인력관리센터”를 각각 “노인인력개발센터”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본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인천광역시 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명칭 및 사업내용 등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지침」 이 시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에 대한 명칭 및 운영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노인인력관리센터 명칭 변경 (제명)
 - 노인인력관리센터 → 노인인력개발센터
- 센터의 수행 사업 조정 (제3조)
-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한 수탁기관 명시 (제4조제1항)
 - 법인·단체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조정 (제9조제2항)
 -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제출기한 : 3월말 → 2월말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12월 24일

남동구 조례 제988호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노인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관”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남동구노인복지회관위탁기관” 을 “수탁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분야 교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 의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수탁운영 계약) 수탁자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선정된 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호 중 “노인복지회관” 을 “복지관” 으로 한다.

제17조 제목 중 “회관” 을 “복지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 으로 한다.

제22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 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 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및 제21조 중

“회관”을 각각 “복지관”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위탁 심사자료의 구성 (제7조 관련)

구 성	내 용
1. 위탁신청 법인에 관한 일반적 사항	○ 법인 유형 및 소재지 ○ 법인 정관 ○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과 이력서 ○ 관련 사회복지사업 수행 실적
2. 시설운영 계획	○ 조직구성 - 시설장 인적사항과 이력서 - 종사자 확보계획 -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 사업계획 -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 ○ 시설운영 -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 재정운영계획 - 재정투자계획 - 재정확충방안
3.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고 방안 ○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방안 ○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방안

[별표 2]

□ 노인복지관 위탁 해지처분 (제11조 관련)

위 반 사 항	해지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 허가 취소등)에 의한 법인설립 허가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때	해 지	-	-
2. 수탁자가 조례 제9조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위배 하였을 때	1차 기관경고	2차 기관경고	해 지
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훼손 하거나 관리에 소홀함이 입증 되거나 예상될 때	1차 기관경고 및 조례 제16조에 의한 원상복구	2차 기관경고 및 조례 제16조에 의한 원상복구	해지 및 조례 제16조에 의한 원상복구

[별표 3]

□ 노인복지관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3조 관련)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주 간 (9:00 ~ 18:00)	평일 주간 1회 최초 4시간 이내	30,000원	기준시간 초과 시 기본요 금액의 10퍼센트를 추가 징 수한다.
야 간 (하절기 기준) (18:00 ~ 22:00)	최초 4시간 이내	35,000원	
토, 일, 공휴일 (9:00 ~ 18:00)	최초 4시간 이내	40,000원	기준시간 초과 시 기본요 금액의 10퍼센트를 추가 징 수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지역사회와 종합적 노인복지증진 전담기관인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이 「노인복지법」 제36조가 개정됨에 따라,
- 「남동구노인복지회관」의 명칭 및 일부 용어의 정비 등 변경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노인복지회관 명칭변경 (제명 등)
 - 남동구노인복지회관 ➡ 남동구노인복지관
- 복지관 임대근거 개정 (제17조제2항)
 - 복지관 시설의 일부임대시 관련규정 수정
 - 근거 및 인용법령 개정
- 기타 경미한 용어의 정비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12월 24일

남동구 조례 제98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여성정책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인천광역시장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추진실적의 분석·평가)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권익과 사회 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통계·자료의 성별 구분) 구청장이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여성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단체의 활동 및 여성관련 행사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여성주간행사)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

하거나 행사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의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 구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1조(구정참여의 확대) 구청장이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상당수를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참여위원의 중복은 가급적 피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자격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 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모성보호의 강화) 구청장은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남녀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남녀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여성의 권익 및 복리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관련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6조(여성복지 및 권익증진)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소득 한부모 가정·미혼모·가출여성 등 요보호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보호사업
2.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3. 그 밖의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17조(직장 내 성차별 개선 등) 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성차별 및 성희롱예방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여성정책위원회

제18조(여성정책위원회)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리증진 등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문제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자
2.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여성 구의원
4.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

제2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제27조의 사유로 보궐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 ② 간사는 여성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업무 담당이 된다.
-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29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3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
관련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4. 여성 지도자의 육성 및 여성의 교육·연수 지원
5.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6. 한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3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
여야 한다.

-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 ③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4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지방재정법」 제91조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운용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리관은 여성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여성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3조(유효기간)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가 시행된 날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 이유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여성정책 발굴을 통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여성정책위원회의 설치 (제18조)
- 위원회의 기능 (제19조)
- 위원회의 구성 (제20조)
-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제30조)
- 기금의 용도 (제31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12월 24일

남동구 조례 제990호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남동구 논현동(소래지역)에 설치된 해수공급시설”을 “해수공급시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공급시설”이라 함은 해수취수·정수시설 및 송수관·저장탱크 등의 제반 시설을 말한다.

2. “공사”라 함은 해수공급시설로부터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상가)를 연결하는 송수관 및 그 밖의 관리시설 등의 설치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해수공급시설에 의하여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해수사용량에 비례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수공급시설에 의한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해수공급시설의 공급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적용범위 (제3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12월 24일

남동구 조례 제99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3.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가족교육, 사회적응교육
4.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5.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 교육
6.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알선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민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구청장은 구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등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제4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의원
2.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관계 전문가
3.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 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용어의 정의 (제2조)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지원사업 및 예산 (제4조 및 제5조)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 및 제9조)
-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직무 등 (제10조부터 제14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12월 24일

남동구 조례 제99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보호, 상담지도, 교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 육성과 복지증진 서비스를 위한 업무를 말한다.

제2장 지역아동센터

제3조(사업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 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가정 아동
2. 학교장 추천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3.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4.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5. 한 부모·조손·장애인·다문화 가정의 아동
6. 구청장 및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5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호 및 건강 증진 지원 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6. 그 밖의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2. 센터 이용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3장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지역아동센터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
 6. 지역아동센터 이용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자
 7. 기타 복지관련 전문가

- ④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5.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 이유

-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역아동센터의 용어의 정의 (제2조)
-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의 주체 (제3조)
-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 (제4조)
-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제5조)
-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의 지원 (제6조)
-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제7조)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12월 24일

남동구 규칙 제74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10억원” 을 “20억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심사 기준 금액이 2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심사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제4조제1항제1호)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12월 24일

남동구 규칙 제74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3%” 를 “2퍼센트” 로, “1%” 를 “1퍼센트” 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대출금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에서 대출된 금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의 대출 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를 연리 2퍼센트로 조정 (제6조제2항)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74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1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2. 2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 아래,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
하고, 공공기관부터 솔선 구매하여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를 도
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
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 환
경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래길 88
☎ : 032)453-2609, FAX : 032)453-2600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5. 붙 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0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 아래,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공공기관부터 솔선 구매하여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 적용대상 공공기관 (안 제4조)
- 구매의무 범위 (안 제8조)
 - 직접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 용역, 건설공사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 구매 예외 (안 제9조)
-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안 제10조)
- 포상 (안 제13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

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구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제6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 ②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친환경상품 구매 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조사·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

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743호

공 시 송 달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37조 규정 위반(시설물전부멸실)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75조 규정을 적용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하였으나 불참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우편물 송달이 불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9년 12 월 21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공고기간 : 2009. 12. 21 ~ 2010. 01. 04(15일간)
3. 행정처분 대상업소 내역

교부번호	업종	업소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주거지	위반내용	행정처분사항
527	즉석판매제조가공	강남정육할인마트	이규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9-25	인천. 서구 신현동 112-118 38통4반 조은그린빌 가동 b01호	시설물전부 무단매설	2009.10.21
9	용기, 포장 제조	나나실업	이순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83 - 21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391-142 28통7반	시설물전부 무단매설	2009.10.21
377	즉석판매제조가공	동원 건어물	김선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05 - 1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04-3 12/6 유정빌라A동 202호	시설물전부 무단매설	2009.10.21
98	식품소분업	럭키슈퍼마켓	박현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01 극동지하상가 101호	인천. 계양구 효성동 1-30 52통2반 삼성하이트맨션 801동 301호	시설물전부 무단매설	2009.10.21
396	즉석판매제조가공	보강유황오리건강원	구대화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83 - 7	인천. 연수구 선학동 399-4	시설물전부 무단매설	2009.10.21
98	즉석판매제조가공	부일식품	김성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66 - 2	인천 남구 관교동 13-6 삼환아파트 102동 402호	시설물전부 무단매설	2009.10.21
간석1-251	일반음식	강원도토속음식점	정순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01-54	인천 남구 주안동 1550번지 10호 2통 5반	시설물전부 무단매설	2009.10.21
구월1-785	일반음식	앗또호프	이영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25-30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개동 148번지 21호 11/6 LG드림빌 102-102	시설물전부 무단매설	2009.10.21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행정처분일 : 2009.12.21
6. 사유 : 영업시설물 무단매설
7.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8. 청문일 : 2009.10.28(수) 11:00
9. 공시송달 청문일 : 2009.12.07(월) 11:00
10. 유의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1.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2)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7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대 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유니캄스 외 98건
 - 공 고 기 간 : 2009. 12. 21. ~ 2010. 01. 07.
 - 공 고 내 용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09년10월1회차)
 - 공시송달 공고대상자 명단 : 게재생략(관계부서 비치 및 구 홈페이지 참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납부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 수취인 미거주 ·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의무보험 과태료 납부대상자께서는 납기내 기간 2009. 12. 31일(납기후일자-2010. 2. 1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032-453 -2925 ,2926)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농협, 또는 전국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과태료 납부대상자가 2009. 12. 31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 가산금 징수 및 매 1개월마다 과태료의 1.2%씩 최대 60개월 동안 증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 - 17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대 상 :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김시용 외 149건
 - 공 고 기 간 : 2009. 12. 21. ~ 2010. 01. 07.
 - 공 고 내 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09년 11월2회차)
 - 공시송달 공고대상자 명단 : 게재생략(관계부서 비치 및 구 홈페이지 참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인 미거주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의무보험 미가입자께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시어 보험가입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3. 의무(책임)보험 계약을 이미 체결하셨거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증명서류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손해보험팀(☎032- 453-2925, 2926 FAX : 032-453-291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공고기한 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예고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746호

2009.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가격조정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09. 12.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결정·공시

- 대 상 토 지 : 2필지 (아래참조)
- 기 준 일 : 2009년 7월 1일
- 결 정 내 용 : 토지 지번별 가격(원/㎡)

토지소재지	기준일	당초지가	조정지가
남촌동 491-19	2009. 7. 1	298,000원/㎡	298,000원/㎡
논현동 29-3	2009. 7. 1	173,000원/㎡	175,000원/㎡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거친 것인 바,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032)453-2482,248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9 - 17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대 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이선태 외 584건
 - 공 고 기 간 : 2009. 12. 22. ~ 2010. 01. 08.
 - 공 고 내 용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09년 장기미가입)
 - 공시송달 공고대상자 명단 : 게재생략(관계부서 비치 및 구 홈페이지 참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납부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 수취인 미거주 ·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의무보험 과태료 납부대상자께서는 납기내 기간 2009. 12. 31일(납기후일자-2010. 2. 1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032-453 -2925 ,2926)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농협, 또는 전국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과태료 납부대상자가 2009. 12. 31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 가산금 징수 및 매 1개월마다 과태료의 1.2%씩 최대 60개월 동안 증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12월 22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754호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주민 공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2. 24.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람기간 : 2009. 12. 24 ~ 2010. 1. 8(공고일후 14일간)

2. 공람내용

가. 기본계획 변경 조서

구 분	고시 번호	정비사업 유형	구역명	위 치	면적(m ²)	용적률 (%)	건폐율 (%)	추진 단계	비 고
기정	169	주거환경개선	만부지구 구역	만수동 1번지 일원	40,000	250 이하	50 이하	2	
변경	169	주거환경개선	만부지구 구역	만수동 1번지 일원	49,800	250 이하	50 이하	2	면적증가 (24.5%)

나. 변경사유

만부지구구역 인접 재건축판정 공동주택 및 잔여지(상가 등)를 포함한 구역 확대를 통하여 구역의 정형화 및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 도모

3. 기타 관련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 남동구청 도시개발과(☎ 453-2991)

○ 만수2동 주민센터(☎ 453-5412)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 - 1756호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차량 매각 전자입찰 재공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에 따른 감차보상차량에 대하여 공개 경쟁 입찰로 매각코자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입찰에 부치는사항(물건별 개별입찰)

건 명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차량 매각		
품명·규격·사양	아래 현황 참조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일시	2009. 12. 24(목) 10:00 ~ 2009. 12. 31(목) 16:00		
입찰서 제출처	온비드 (http://www.onbid.co.kr)		
개찰일시	2010. 01.04(월) 10:00	개찰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매각대상 차량 현황(물건별 개별입찰)

차 명	차 종	차량번호 (차대번호)	최초등록일자	운행거리 (Km)	취득가격 (천원)	예정가 격 (천원)
포터초장축슈퍼캡 냉동탑차	중형화물	(KMCXNS7BPV U148069)	1997.10.24	352,903	1,500	1,200
포터초장축 슈퍼캡	소형화물	(KMFXXKS7BPY U440777)	2000.11.20	92,246	3,100	2,480

○ 매각차량 보관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주차장(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

※ 위 차량은 사업용화물차량 감차사업에 의거 취득한 차량이므로 영업용으로는 매각할 수 없으므로 입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및 참가 자격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 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위배되지 않는 자(개인, 일반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온비드”에 회원 등록 및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를 등록한 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의 입찰 시스템에서 회원등록 및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위배되지 않는 자로서 개인 또는 일반, 법인사업자로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 하자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여 신청자는 사용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응할 수 없으며, 매매계약시 감차화물자동차 재활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입금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공매마감 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납부계좌에 납부 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 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와 입찰 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한 경우 또는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제출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입찰보증금은 위약 벌로써 우리 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 시 입찰무효처리

5. 낙찰자 결정방법

-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금액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후 차량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합니다.

7. 입찰의 연기 및 취소

- “온비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 의(공매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입찰자는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는 차량 상태 등을 확인 및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은 현 상태로 매각하며, 차량 보관 장소에서 낙찰자가 직접 인수합니다.
- 입찰참가자에게 차량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입찰자가 직접 현장답사로 같음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 및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의 당연 부담금 등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고 차량인도 후 발생하는 물품의 망실, 사고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책임을 집니다
- 매각차량이 중고차량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매입한 차량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이유로 우리 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9. 문의사항 안내

- 차량매각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032-453-2914 담당자 문형섭)

- ※ 차량상태 확인을 위해 방문하실 경우 미리 전화(☎032-453-2914)바
랍니다
- 온비드 이용에 관한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 시스템
(02-1588-5321)
 -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http://www.onbid.co.kr> 온비드 시스템상
 -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나의온비드 / 나의 입찰물건/ 입
찰진행중/ 입찰상세정보
 - 입찰결과 : 나의온비드 / 나의 입찰물건 / 입찰결과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7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대 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김남벽 외 90건
 - 공 고 기 간 : 2009. 12. 24. ~ 2010. 01. 11.
 - 공 고 내 용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09년 10월2회차)
 - 공시송달 공고대상자 명단 : 게재생략(관계부서 비치 및 구 홈페이지 참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납부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 수취인 미거주 ·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의무보험 과태료 납부대상자께서는 납기내 기간 2010. 01. 04일(납기후 일자-2010. 2. 1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032-453 -2925 ,2926)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농협, 또는 전국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과태료 납부대상자가 2010. 01. 04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 가산금 징수 및 매 1개월마다 과태료의 1.2% 씩 최대 60개월 동안 증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7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대 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손요욱 외 113건
 - 공 고 기 간 : 2009. 12. 24. ~ 2010. 01. 11.
 - 공 고 내 용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09년 10월3회차)
 - 공시송달 공고대상자 명단 : 게재생략(관계부서 비치 및 구 홈페이지 참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납부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인 미거주·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의무보험 과태료 납부대상자께서는 납기내 기간 2010. 01. 04일(납기후일자-2010. 2. 1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032-453 -2925 ,2926)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농협, 또는 전국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과태료 납부대상자가 2010. 01. 04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 가산금 징수 및 매 1개월마다 과태료의 1.2%씩 최대 60개월 동안 증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7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대 상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노용배 외 194건
- 공 고 기 간 : 2009. 12. 24. ~ 2010. 01. 11.
- 공 고 내 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09년 11월3회차)
- 공시송달 공고대상자 명단 : 게재생략(관계부서 비치 및 구 홈페이지 참조)
-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인 미거주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 의무보험 미가입자께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시어 보험가입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 3. 의무(책임)보험 계약을 이미 체결하셨거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증명서류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손해보험팀(☎032- 453-2925, 2926 FAX : 032-453-291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4. 만약 공고기한 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예고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9 - 61호

간석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변경) 고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번지 일원의 「간석 주거환경 개선정비구역」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인가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99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9. 12. 24.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명칭(변경없음)

- 종 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 명 칭 :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 79,507.3㎡(토지대장상 면적)
변경 - 79,489.4㎡(감17.9㎡) (예정지적좌표측량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기정 - 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 주 소 : 지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7-8번지)
변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4번지)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시 행 기 간 : - 지정 : 인가고시일로부터 ~ 2011년 12월 31일
- 변경 : 인가고시일로부터 ~ 2012년 12월 31일

5.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지정	변경	변경후		
계		79,507.3	감)17.9	79,489.4	100.00	
공동주택 용지	소계	61,153.0	-	61,153.0	76.93	단지내상가 및 주민공동시설 포함
	1BL	22,583.0	-	22,583.0	28.41	
	2BL	38,570.0	-	38,570.0	48.52	
정비기반 시설용지	도 로	11,394.3	감)17.9	11,376.4	14.31	무상귀속
	경관녹지	1,934.0	-	1,934.0	2.43	무상귀속 (2개소)
	소공원	1,503.0	-	1,503.0	1.89	무상귀속 (2개소)
	노외주차장	1,765.0	-	1,765.0	2.22	무상귀속
유보지		424.0	-	424.0	0.54	무상귀속
종교용지		1,334.0	-	1,334.0	1.68	존치 1,192㎡

나.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등 건축계획

구분		단위	내역							
			1BL				2BL			
공동주택	대지면적	㎡	22,583.00				38,570.00			
	건축면적	㎡	기정 : 3,074.61 변경 : 3,331.02				기정 : 5,111.90 변경 : 5,539.87			
	지상연면적	㎡	기정 : 51,709.87 변경 : 52,437.35				기정 : 86,686.38 변경 : 87,912.19			
	지하연면적	㎡	기정 : 21,560.06 변경 : 21,999.10				기정 : 30,121.84 변경 : 32,964.86			
	건폐율	%	기정 : 13.61% 변경 : 14.75%				기정 : 13.25% 변경 : 14.36%			
	용적률	%	기정 : 228.98% 변경 : 232.09%				기정 : 224.75% 변경 : 227.84%			
	최고높이	층	26				28			
	주차대수	대	지상	기정 : 5(0.8%) 변경 : 0(0%)		645	지상	기정 : 2(0.3%) 변경 : 3(0.3%)		기정 : 928
			지하	기정 : 640(99.2%) 변경 : 645(100%)			지하	기정 : 926(99.7%) 변경 : 926(99.7%)		변경 : 929
조경면적	㎡	기정 : 9,552.63(42.3%) 변경 : 9,665.53(42.8%)				기정 : 16,292.96(42.2%) 변경 : 16,623.67(43.1%)				

6.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단위	내역	
					1BL	2BL
건설 호수	공동 주택	임대	60㎡이하	세대	178	-
			40㎡이하	세대	138	-
		분양	85㎡초과	세대	-	130
			85㎡이하	세대	185	596
			60㎡이하	세대	86	-
		계				587세대

7.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도로

구분	구 모				연장(m)	기점	종점	비 고	변경사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4	35-38	12,450	서해안로	중봉로	일부구간 확폭 (L=181m)	
기정	중로	2	448	15-18	257	대1-14	중2-377	구역내 구간	
기정	중로	2	377	15	339	소3-52	대1-13	구역내외 구간 포함	
기정	소로	1	229	10.5	140	소3-64	중2-377	구역내외 구간포함	
기정	소로	2	227	9	115	소3-64	대1-14	구역내외 구간포함	
기정	소로	2	56	9	251	소3-51	대1-14	구역내외 구간포함	표기 오류 수정
변경	소로	2	56	8~9	251	소3-51	대1-14	구역내외 구간포함	

나. 주차장(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비고
주차장	노외주차장	간석동 224-80 일원	1,765	기존 주차장 위치변경

다. 녹지(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비고
간석 녹지-1	경관녹지	간석동 911-1	656	신설
간석 녹지-2	경관녹지	간석동 912-4	1,278	신설

라. 공원

구분	시 설 명	시 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m ²)	변경사유
기정	간석소공원-2	소공원	간석동 224-219번지 일원	795	표기오류수정
변경	간석소공원-1				
기정	간석소공원-1	소공원	간석동 224-713번지 일원	708	표기오류수정 형태변경
변경	간석소공원-2				

8. 첨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9 - 62호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고시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정 비 기 간	2010년 1월 2일 ~ 2015년 12월 31일		
대 상 소 하 천	총 2 개소(소곡천, 음실천)		
총 사 업 비	6,608백만원	총 연 장	4,833km
목 적 및 정 비 효 과	재 해 예 방	○ 홍수에 의한 제방의 침식 및 세굴방지피해 예방 - 농경지 : 99,3ha ○ 제방의 축제계획 및 보축계획을 통한 홍수피해 경감효과 및 치수효과	
	생활환경개선	○ 남동구 관내 소하천 치수·이수·환경적 관리 체계확립 - 치수효과 : 농토보호효과 99,3ha - 이수효과 : 소하천 2개소 유지유량확보 - 환경효과 : 소하천 2개소 목표수질(Ⅱ~Ⅲ)등급 수질 향상 ○ 자연형 하천계획 등에 의한 친수환경 조성	

가.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설과 하수팀

나. 열람서류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1부
- 관계도서 1부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9-63호

인천도시계획시설(하수도: 동녘2수문 앞 하수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명: 동녘2수문 앞 배수정비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개발과(☎032-453-299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5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9. 12 . 24.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3-22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하수도(동녘2수문 앞 하수도)
 - 명 칭 : 동녘2수문 앞 배수정비공사

3. 사업의 규모

- 하수박스(3.0m×2.5m), 연장(L)=154.66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있음】

- 당 초

- 1) 성 명 :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7-8번지

- 변 경

- 1)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앙공원길 38(구월동 1464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변경있음】

- 당 초 : 2008. 05. 23 ~ 2009. 12. 31
- 변 경 : 2008. 05. 23 ~ 2010. 0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첨」

7.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8. 첨 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